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2. 26.(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9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 최성준 위원장

- 제9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보고안건>으로 되어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미래부와 공동으로 발의하는 방송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 조정이 더 필요해서 오늘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의결안건> 1건에 대해서는 공개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5-10-024~044)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21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배경은 2014년도에 검찰청 및 경찰청 등이 개인정보를 누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위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통보한 21개 사업자이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경과는 2014년도 3월~8월까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금년도 1월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조화·의견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반사항 및 처분규정입니다. (주)신비웹 등 2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법 제22조제1항을 위

반하였습니다. 중앙방송(주) 등 4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혼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수탁사업자 및 개인정보취급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미공개함으로써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주)장원교육 등 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공개함으로써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제너시스비비큐 등 20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티켓몬스터 등 8개 사업자는 이용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 함으로써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티온네트워크는 동의를 철회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함으로써 법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였고, (주)세원아이씨케이 등 3개 사업자는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안)입니다. 기본방향은 21개 해당사업자 모두 정확한 누출 시점, 누출경로 파악 등이 어려운 누출원인과 법 제28조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과태료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상공 기업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차상위 영세기업은 제28조 위반사항이 2개인 경우라도 과태료 가중을 적용하지 않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태료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만 4쪽과 5쪽에 걸쳐서 과태료의 기준금액과 가중 및 감경사유 그리고 이에 따른 각각의 세부적인 금액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쪽, 과태료의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주)제이티앤미디어 등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조항이 없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과징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입니다. 그래서 (주)중앙방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기본과징금에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 50%를 감경하여 12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상공 기업,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그다음에 관련 매출액이 적은 기업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6쪽의 위반 사업자별 세부 처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3월 중에 행정조치를 통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누출사업자 현황,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안) 그리고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는 다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정조치 완료 여부는 저희가 직접 다 확인한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시정조치 완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정조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시정조치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처분 의결을 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그 시정명령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지금 위반 여부로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저희들이 조사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위반된 내용들이 시정됐거나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통보한 내용은 해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사실을 저희에게 통보해 왔고, 저희가 해당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해보니 망법상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정조치라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번에 조사하게 된 것이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21개 사업자에 대해 전부 한 번에 통보가 온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몇 차례에 걸쳐 통보 온 것을 우리가 이번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조사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한 번은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유사한 형태가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한 달 치씩 묶어서 하는 것인지, 대형 위반사고의 경우에는 1개 사업자가 통보가 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조사해서 행정제재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러 개 사업자를 묶어서 조사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중대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일 건이라도 즉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이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 입건 등 형사처벌은 안 받고 우리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해킹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경에서 수사해서 처분을 한다면 아마도 예를 들어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과징금이다, 과태료다 이렇게 처분함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너시스비비큐, (주)티켓몬스터 등 이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일부 사업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정조치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조회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하게 되면 그쪽에서 의견조회를 낼 때 사전조치를 다 했다고 통보하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건은 검찰, 경찰로부터 위반내용을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또 조사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통상 저희들이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유출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조사와 제재하는 것이 주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러한 정보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대형포털이나 여타의 인터넷 쇼핑몰 등 이런 기업들에 대해 1년 단위의 조사계획이나 점검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규제에 비취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개인정보보호라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안건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이핀 관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핀이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이핀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역추적하면 그 아이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그 외 기타 인적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핀 관련해서는 민간 부문 아이핀과 공공부문 아이핀 이렇게 나뉘어져서, 민간 쪽에서 사용하는 아이핀 숫자가 훨씬 많고 기간도, 과거의 역사도 오래 됐고 또 민간부문 아이핀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그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모 언론에서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어제 관련된 아이핀 사업자들과 회의를 했고 관련 부분에 대해 확인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부처나 아니면 그 아이핀을 직접 관리하는 신용평가기관과 또 공공 부문은 클리드(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라고 정부 산하기관이 있고 또 인터넷진흥

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있으면 정부 쪽이나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자꾸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여부 확인을 우선 잘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그럴 리가 없다’, ‘아이핀 자체가 보안성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기된 아이핀의 문제점은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팔겠다’ 이런 것이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역추적하면 주민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비공식적으로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추적하기가 힘들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내지는 ‘아이핀 체제, 시스템 자체가 보안성이 높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관계자 회의를 통해 대책 한 번 수립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내용에 대해 철저히 사실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안전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계속 반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민간 부문의 아이핀을 관리·운영하는 방통위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도 내용에 의하면 아이핀을 통해 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핀의 기술원리상 관리하는 신용평가기관이 해킹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아이핀을 통해 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아이핀으로서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지만 설계는 원래 당연히 그렇게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은 또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설계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단점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 그런 일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다고 확인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까지 포함해서 단순히 관리하는 업체의 진술이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그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재홍 상임위원

- KBS의 광복 70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가 원래 매주 토요일 8시에 4부작으로 방송하기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 방송하고 조기 종료되고, 말하자면 기획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배경은 일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파악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차 방영이 된 직후에 11일 KBS 이사회에서 이인호 이사장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본, 북한에서 나올 수 있는 내레이션(narration)이 포함되어 있다, 너무 편향되어 있다, 제작진이 지식이 부족하고 우매하면 이사회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정도 수위의 발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저도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14일 2회 방송은 됐습니다. 그러나 21일 3회 방송분이 나오지 않았고 지난 토요일입니다만 제가 확인한 결과, 조기 종료입니다. 이것은 이사장의 문제제기로 이사회에서 논란이 깊어 있게 될 듯 하다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식 있는 몇몇 이사 분들이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 방송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막아서 다행히도 크게 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이 밖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제작진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사장의 문제제기로 이 기획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1일 이사회에서 그런 발언이 알려지니까 그다음 날 12일 즉시 KBS 내부의 PD협회에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북한을 코트(quote)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BS 이사회를 이념 전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제가 있었다면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은 일반 시청자가 아닙니다. 일반 지식인이 아닙니다. KBS의 이사장으로서 큰 영향력이 있는 자리이고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이사장의 말 한마디가 일선 제작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준비된 대로 가지 못하고 중단된 것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씀 드리면 사무처에 요청합니다. KBS 이사회에서 2월 11일 속기록, 정확한 발언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이 정리되는지, 기록되는지 그것이 왜 공개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특집 광복 70년 <뿌리 없는 미래>가 원래 4부작으로 기획됐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진위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로 끝냈으면 조기 종료이고 애초에 기획됐던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왜 중단됐는지 그 배경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자료요청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직무입니다. 직접 요구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진상파악에 착수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그날 이사회에서 발언과 프로그램의 중단사태가 방송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제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챕터(chapter)를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어 허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정신은, 법의 취지는 정치언론학상 일반이론으로, 소유와 경영과 편집·편성권의 분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KBS의 소유, 정부의 100% 투자이지요.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 말하자면 뽑힌 사장이나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은 한 걸음 더 떨어져 있는 경영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독립된, 그로부터 자율 제작권을 행사해야 할 편성권, 제작권이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편성본부와 제작본부가 있고 보도본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업 저널리즘의 자유활동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언론의 일반이론입니다. 그것이 침해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왜 중대하느냐 하면 이인호 이사장이 방통위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할 때 많은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그 개인적 학문의 소신이라고 할까, 역사관이 너무 편향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특정 사회적·이념적 집단과 함께 행동했던 적이 있고 그것이 KBS 이사회를 통해 KBS 제작 프로그램에 투영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공정성이 과연 보장되겠는가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금년이 광복 70주년입니다. 그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2월 한 달 4부작으로 첫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더군다나 공영방송일 경우 더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요청사항, 사무처에서 엄정하게 자료요청하고 파악,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 2월 11일자 이사회에서의 회의 내용에 관해 먼저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방송이 2부작까지만 방송이 되고 그 이후에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지금 김재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또 거꾸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방송 편성에 대해 간섭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더 이야기하실 건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아닙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기타 안건, 김재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 내지는 사무처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 사무처에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해 심의·의결 내지는 보고사항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밖에 다른 이야기는 심의·의결이나 보고사항이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개인의 의견이나 “방통위가 이런 일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사무처를 통해 KBS에 속기록을 확인하고 어떤 형태로든 조사하는 것도 적절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방통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하고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지, 우선 당·부당 문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그것을 먼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송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 지금 딱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방송정책국에서 우선 김재홍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이전에, 방통위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 어떤 측면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검토를 하고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한 이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절차로 먼저 검토한 이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만, 속기록은 지금까지 KBS에서 방통위에 제출하지 않았고, KBS 규칙에 의해 속기록은 KBS이사회에서 의결해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호 이사장의 발언내용이 언론보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큰 본질은 같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KBS 이사들 내부에서도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각계 언론이나 시민단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번 요구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자료요청, 이것이 과연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직무냐, 심결사항이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위반되는 심증이 있는 그런 사안이면 예를 들면 방송의 독립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 방송법입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고,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의 심결사항이 중요한데, 곳곳에 보면 방송 기본정책에 관해 수립하고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KBS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KBS 보도본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KBS 사장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천한 이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규제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에 대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직무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미비하다면 아까 말씀 드린 언론학 일반이론에 누구나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했었던 것은, 저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BS의 그 사안에 대해 일단 팩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그다음에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회의에서 논의를 할 수 없고”,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료요청을 하는 것에 앞서서 우선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이사회에서 어떤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객관적으로 일어난 방송 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고 조치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건과 관련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 드리고 다른 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기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기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제가 어떤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위원들께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타 논의사항에서 문제제기하고 논의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허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언론을 통해서든지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논의 전에 이런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구두라도 말씀해 주시면 각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사실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지금 사무국에 이야기해서 우선 최소한의 기초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추후 거기에 따른 검토를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간단히 제 입장을 말씀 드리면, 내부적으로 김재홍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나서 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인호 이사장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제작진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고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한 방송법 취지의 위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이사장이 이러한 방송내용에 대해 경영진으로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개별 이사들 나머지 열 분의 이사들도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방송내용에,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인호 이사장이 공영방송의 방송내용, 편성과 관련된 공적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였다면 이사장이 독자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 편향적이었다고 예단하기보다는 별도의 논의구조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면 훨씬 원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호 이사장께서 아주 단언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문제가 있다”, “편향되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저는 그렇게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하여간 그 발언의 정확한 표현을 확인한 이후 그다음에 앞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저는 저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주초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KBS에 대해 정부배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EBS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부배당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를 준비하면서 KBS 자료만 확인하고 또 법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주로 KBS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EBS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7일자, ‘공문’도 아닙니다. ‘업무협조’ 문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이 KBS에 대해 2014년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대한 확정배당성향 28.58%, 약 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배당을 요구하는 ‘업무협조’ 문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이 문서 집행의 근거가 된 국유재산법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국유재산법의 취지는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나 KBS 모두, 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을 보면 기재부가 정부배당 대상기업에 대해 배당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재부의 KBS에 대한 배당 요청이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당시에 방송법 제43조를 보면 KBS의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하고 있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KBS 자본금은 2,060여억원이 납입된 상태이고, 940억원 정도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법이 정한 자본금도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부가 배당부터 요구한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재부가 법에 근거하여 KBS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2호를 보면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재부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 여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됩니다. 각각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KBS가

이사회 의결 전·후 방통위와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지요?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협의는 없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중앙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번째, 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간방송인 KBS에 대해 기재부가 배당을 요청할 경우 그 집행 절차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담당 과장 명의의 '업무협조' 문서를 통해 KBS에게 배당을 요구했고, KBS는 기재부 장관의 결재도 받지 않은 문서를 이사회에 보고했고 또 배당안이 포함된 2014년도 결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기재부와 KBS 사이의 업무가 이러한 업무협조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과연 이 업무협조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업무협조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통상적으로 공문으로 많이 하는데 업무협조의 경우에는 주로 자료제출에 많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관간의 업무협조 문서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중요한 것은 공문으로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배당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기재부 장관의 직인도 없는 상태에서 담당 과장이 이렇게 '협조문서'를 보내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러한 관행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 요청하시든 아니면 KBS에 요청하시든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수립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방송법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KBS의 법정자본금 중 미납된 자본금에 대한 출연계획을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기재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제5항을 보면 이 법에 따른 총괄청, 즉 기재부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는 언론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만큼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방통위가 위임받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와 또 KBS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아까 절차와 관련해서 KBS가 정부배당 결정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가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법 규정이 2011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그 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그 절차를 잘 몰라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가 어제 의결이 된 이후에 사후에 배당수입 결정 기초자료를 보내오면서, KBS로서는 기재부에 대해 그런 배당요구가 있어서 결산안에 넣긴 했지만 배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실시 불가사유'를 여러 가지 적어서 기재부에도 이미 보냈다고 하고 저희에게도 보내왔습니다. 결산이 이사회에서만 통과가 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쳐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또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양한열 과장님은 오늘 여기에 왜 나오신 것입니까? 오늘 안전도 없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상정이 보류된 안전에 대한 보충설명이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고삼석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간에 준비된 안전 외 어떤 이야기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 저는 150% 찬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하는 목적이 무엇이나? 어떤 위원님이 어떤 아젠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마다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의 차이도 있고 또 관심의 정도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KBS의 배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의 공무원 시절의 경험에 의하면 거기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기능이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 중의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저로서는 우선 팩트에 관한 이야기도 모르겠고, 어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제가 KBS에 대해 뭐든지 키워드를 쳐서 다 개인적으로 점검하고 뉴스 인터넷에 뜨는 것을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봐도 많은 검토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방송정책국에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까? 지금 양 과장님은 자기 소관도 아닌데 방송정책국에서 와서 계속 주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어느 위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얼마만큼 하셔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저희가 어차피 위원회 체제이고 위원들의 의견교환, 토론을 통해서 뭔가 방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결론도 도출해야 한다면 안전을 보고 그 날 즉석에서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사전에 사무처에서도

검토가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이 뭐가 문제이고 뭐가 이슈가 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토론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 같이 기초정보는 공유를 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또 고 위원께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들의 관심과 의식 수준에 따라 상황 파악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티타임 때 이미 문제제기를 했고 그때는 방송 중단, 프로그램 중단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자 했으나 어제 한 번 더 취재를 해 본 결과, 원래 기획된 4부작이 조기 종료,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긴급사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는 그저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 개인적인 관심사일까요? 공영방송의 특집프로그램이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직무와 그렇게 동떨어진 것인가? 내가 너무 뽀족한 관심을 보이는 것인가? 저도 다시 한 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래서 관심의 공유라고 할까, 이슈의 공유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상임위원 각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무처는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여론, 언론 또 해당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 지상파방송이면 지상파방송에 대해서 우리의 정책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관심을 공유하고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사건이다 지난 뒤에, 가라앉은 뒤에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 정말 김도 빠지고 재발방지 대책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광복 70주년 올해에, 그 프로그램뿐만 아닙니다. KBS도 후속 특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상파마다 다 그런 특집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념전쟁에 휘말린다면 특정 사회집단의 정말 편향된 역사관이나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면 이것은 정말 중대한 사태입니다. 올해 우리가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넘기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주 후인 3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5분 폐회 】